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5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윤상현 · 강승규 · 이소희
안철수 · 고동진 · 조지연
천하람 · 김용태 · 조배숙
곽규택 · 이헌승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범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5호 중 “범죄경력”을 “범죄경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 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1. ~ 4. (생 략)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u>범죄경력</u> (실효된 형을 포함하 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 다)에 관한 증명서류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범죄경력 및 다음 각 목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u> <u>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u> <u>의 범죄경력</u> ----- ----- -----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u>의2의 죄</u>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u>률」을 위반한 죄</u>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u> <u>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u>

<u><신 설></u>	<u>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u>
<u><신 설></u>	<u>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u>
<u><신 설></u>	<u>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u>
6.·7. (생 략) ⑤ ~ ⑮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 ⑮ (현행과 같음)